

## 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6. 4. 20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6. 4. 20
- 라. 상정일자 :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96. 4. 26)상정
- 마. 의결일자 :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96. 6. 21)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강승준)

#### 가. 제안이유

-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5년 12월 30일 내무부령 제 668호에 의거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1매당 100,000원 이하인 소액의 시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함
- 제15조제1항제1호를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구분하여 균등할 주민세율 중 개인사업자가 기타법인으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
- 제21조제2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에 맞게 “시가표준액”으로 조문정리를 함
- 제28조의 “자동차세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데 받게 하려는 이유는?</li> <li>○ 1년에 체납세 전수는 얼마입니까?</li> <li>○ 타지역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지는 OCR고지서로 하는데 체납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li> <li>○ 1년 전체부과전수의 5% 정도입니다.</li> <li>○ 내무부준칙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li> </ul>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인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98호
의 결	96. 6. 28
년 월 일	(제46회)

제안년월일 : 1996. 6. 21

제 안 자 : 재무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시세(납세고지서 1매당 100,000원 이하인 시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세무비리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나.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시기를 소급적용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가. 신설된 안 제6조의2를 삭제하여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시세(납세고지서 1매당 100,000원 이하인 시세)를 직접 수납할 수 없도록 함

나.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시기를 199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함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p>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u>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1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u></p>	(삭제)
<p>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u>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⑤(생략)</p>	<p>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p> <p>.....</p> <p>.....</p> <p>.....</p> <p>..... <u>시행규칙</u> .....</p> <p>.....</p> <p>.....</p> <p>.....</p> <p>.....</p> <p>②~⑤(현행과 같음)</p>	<p>제1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개정안과 같음)</p> <p>②~⑤(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5조(세율) ①(생략)</p> <p>1. 개인 : 3,000원</p> <p>2. (생략)</p>	<p>제15조(세율) ①(현행과 같음)</p> <p>1. 개인</p> <p>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p> <p>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p> <p>2. (현행과 같음)</p>	<p>제15조(세율) ①(개정안과 같음)</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생략)</p> <p>②(생략)</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4.(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개정안과 같음)</p> <p>1. ~ 4.(개정안과 같음)</p> <p>②개정안과 같음</p>
<p>제21조(과세표준) 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1조(과세표준)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시가표준액 .....</p>	<p>제21조(과세표준) ①(개정안과 같음)</p> <p>②(개정안과 같음)</p>
<p>제28조(신고의무)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 등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에</p>	<p>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승용자동차</p> <p>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p>	<p>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계기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p> <p>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p> <p>3. 정차장</p> <p>4.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p> <p>5. 취득가격</p> <p>6.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p> <p>7. 기타 참고사항</p>	<p><u>대당 연세액으로 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이하</td> <td>18원</td> <td>800씨이하</td> <td>100원</td> </tr> <tr> <td>1,500씨이하</td> <td>18원</td> <td>1,000씨이하</td> <td>120원</td> </tr> <tr> <td>2,000씨이하</td> <td>19원</td> <td>1,500씨이하</td> <td>160원</td> </tr> <tr> <td>2,500씨이하</td> <td>19원</td> <td>2,000씨이하</td> <td>220원</td> </tr> <tr> <td>2,500씨초과</td> <td>24원</td> <td>2,500씨이하</td> <td>250원</td> </tr> <tr> <td></td> <td></td> <td>3,000씨이하</td> <td>310원</td> </tr> <tr> <td></td> <td></td> <td>3,000씨초과</td> <td>370원</td> </tr> </tbody> </table> <p>2. 기타 승용자동차</p> <p><u>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20,000원</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p>3. 승합자동차</p> <p><u>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고속버스</td> <td>100,000원</td> <td>-</td> </tr> <tr> <td>대형전세버스</td> <td>70,000원</td> <td>-</td> </tr> <tr> <td>소형전세버스</td> <td>50,000원</td> <td>-</td> </tr> <tr> <td>대형일반버스</td> <td>42,000원</td> <td>115,000원</td> </tr> <tr> <td>소형일반버스</td> <td>25,000원</td> <td>65,000원</td> </tr> </tbody> </table> <p>4. 화물자동차</p> <p><u>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u></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이하	18원	800씨이하	100원	1,500씨이하	18원	1,000씨이하	120원	2,000씨이하	19원	1,500씨이하	160원	2,500씨이하	19원	2,000씨이하	220원	2,500씨초과	24원	2,500씨이하	250원			3,000씨이하	310원			3,000씨초과	370원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p>2. 기타 승용자동차 (개정안과 같음)</p> <p>3. 승합자동차 (개정안과 같음)</p> <p>4. 화물자동차 (개정안과 같음)</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이하	18원	800씨이하	100원																																																									
1,500씨이하	18원	1,000씨이하	120원																																																									
2,000씨이하	19원	1,500씨이하	160원																																																									
2,500씨이하	19원	2,000씨이하	220원																																																									
2,500씨초과	24원	2,500씨이하	250원																																																									
		3,000씨이하	310원																																																									
		3,000씨초과	370원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 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30%;">구 분</th> <th style="width:30%;">영 업 용</th> <th style="width:40%;">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1,000킬로그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8,500원</td> </tr> <tr> <td>2,000킬로그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9,6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4,500원</td> </tr> <tr> <td>3,000킬로그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3,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8,000원</td> </tr> <tr> <td>4,000킬로그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3,000원</td> </tr> <tr> <td>5,000킬로그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2,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9,500원</td> </tr> <tr> <td>8,000킬로그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500원</td> </tr> <tr> <td>10,000킬로그램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7,5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p>4. 화물자동차 (개정안과 같음)</p>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p>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30%;">구 분</th> <th style="width:30%;">영 업 용</th> <th style="width:40%;">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대형특수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7,500원</td> </tr> <tr> <td>소형특수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3,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8,5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p>5. 특수자동차 (개정안과 같음)</p>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p>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50%;">영 업 용</th> <th style="width:50%;">비 영 업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3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원</td> </tr> </tbody> </table>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p>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개정안과 같음)</p>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p>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p>	<p>②(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 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 여 <u>건설부장관</u>이 결정 고시 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 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부과한다.</p>	<p><u>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 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 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말 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 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 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 는 것을 말한다.</u></p> <p>제51조(납세의무자) ..... ..... .....<u>건설교통부장관</u>.....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p>	<p>제51조(납세의무자)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수정안 포함]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9조제1항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1,000씨씨이하	18원	8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8원	1,000씨씨이하	120원
2,000씨씨이하	19원	1,500씨씨이하	160원
2,500씨씨이하	19원	2,000씨씨이하	220원
2,500씨씨초과	24원	2,500씨씨이하	250원
		3,000씨씨이하	310원
		3,000씨씨초과	370원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 형 특 수 자 동 차	36,000원	157,500원
소 형 특 수 자 동 차	13,500원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